#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신성홀딩스(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아이피에스(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비밀유지계약(이하 "이 계약")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갑"의 솔라셀 국산화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이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설계방법, 시험방법, 생산방법, 시스템구조 및 운용 방법 기타 "갑" 또는 :을"의 영업활동에 유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비밀정보임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한다.
- ② 전항의 비밀정보는 무형 또는 유형(문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외장하드, USB메모리등, 씨디-롬, 플로피 디스크, 자기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도면, 노트, 메모, 또는 기타 일체의 매체에 기록 또는 보존되어 있는 것)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조(비밀정보의 사용)

- ①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이하 "정보 수령자"라고 함)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정보 수령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형식에 따라 비밀정보를 보관 및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 사의 비밀정보를 생산할 수 없다.
- ③ 비밀유지계약의 계약기간 및 그 해지 또는 만료 후 3년간 "을"은 비밀정보를 비밀유지계약에 정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수령자"는 그 이사, 임원, 종업원, 대리인, 보조인(이하 "임직원등") 및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등 기관, 단체, 자회사, 용역회사, 하도급회사, 제휴회사 기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문 기타 거래선에 관련된 모든 자(이하 "거래관계자등")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의 목적상 전항의 임직원등 또는 거래관계자등의 행위는 이를 "정보수령자"의 행위로 본다.
- ④ "정보수령자"는 산업스파이 및 그 본사 및 공장을 방문하는 자(이하 "방문자")에게 비밀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유지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목적사업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때에 소급한다.
- ② 당사자간에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본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③ 당사자간에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이하 "불성립 확정일") "정보수령자"는 불성립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제6조(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①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이외에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 ②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동종 또는 유사한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 권은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 제7조(비밀정보의 예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갑' 또는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 ②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갑' 또는 '을'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③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갑' 또는 '을'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동일한 정보
- ④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갑' 또는 '을'이 정보제공 이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⑤ '갑' 또는 '을'이 사전에 유출을 허락한 정보

#### 제8조(이 계약의 해지 등)

- ① 일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하 "이 계약 해지일") 비밀정보의 사용을 중지하고 비밀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매체를 "정 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 ①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반행위의 금지, 예방청구 할 수 있다.
- ② 정보수령자"는 전항의 "정보제공자"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가 포함된 매체의 폐기 및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10조(무과실 책임)

제8조(계약의 해지)와 제9조(손해배상 및 금지청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 제11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서의 수정이나 조항의 첨가는 '갑'과 '을'의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 및 첨가할 수 있다.

## 제12조(본 계약서와의 관계)

- ① 당사자간에 본 계약서가 체결되어 비밀유지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본 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본 계약서와 이 계약서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의한다.
- ③ 제1항에서 본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을"은 본 계약 해지일 (또는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영업양수도 등)

"정보 수령자"의 영업이 양수도 되거나 합병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계약 15일 전에 서면으로 "정보 수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양수도의 여부는 "정보제공자"의 결정에따라야 한다.

## 제14조(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선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따른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9 년 4월 6일

"갑":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450 증평산업단지 ㈜ 신성홀딩스 대표이사 이 완 근 (인)

"을":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문 상 9